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배봉산내 숲속도서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2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6월 1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 가. 동대문구 배봉산 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 건립은 도시공원으로서 노후화된 공원관리소와 개방형 화장실을 확충하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 나. 도시공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삶의 휴식을 제공하고 독서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원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부지용도에 부합하는 사항이므로,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구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 면 적 : $332.27m^2$
- 지 목 : 임 야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공시지가 : 54,558천원($332.27m^2 \times$ 평균164.2천원)

나.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산32-20
- 규 모 : 대지면적 $332.27m^2$, 연면적 $447.87m^2$ (1동)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및 개방형 화장실(1층, $138.09m^2$)
북카페형 도서관 등(2층, $309.78m^2$)
- 사 업 비 : 1,830백만원(시비, 구비 등)
- 건립기간 : 동의완료 후 ~ '18. 12.

다. 그간의 추진사항

- '16.11.09 : 배봉산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 계획(동대문구)
- '17.10.24 : 제11차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8.03.06 : 배봉산근린공원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한 협의요청(동대문구)
- '18.04.18 : 배봉산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축조 동의계획(서울시립대학교)
- '18.05.10 : 제3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무상사용 적정)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배봉산 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유지 상에 구 소유의 영구 시설물 축조에 대해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합의 후,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나. 숲속도서관 건립 현황

- 배봉산 근린공원 내 숲속도서관(이하 “숲속도서관”)은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공원관리소와 개방형 화장실이 위치하던 자리에 이를 확충하고, 자연친화적인 숲속도서관을 건립하여 동대문구민들에게 독서공간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2017년 10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숲속도서관을 포함하여 광장 감축, 놀이터 이전 등 “배봉산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의 건”에 대해 조건부 가결로 심사를 마쳤음.
- 어린이놀이터 동선 재검토, 숲속도서관의 공간계획 재수립, 장애인 이동이 용이하도록 공간 확보 등을 포함 공원 전체의 관리 기능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음.
- 이후 2018년 5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숲속도서관 부지의 공공사용 목적 등이 인정되어 무상사용이 승인됨에 따라 동대문 구청은 5년간 연간 136만원의 부지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 것임.
- 숲속도서관은 총 447.87㎡(136평, 지상2층)의 규모로 1층(138.09㎡)에는 관리사무소와 개방형 화장실, 2층(309.78㎡)에는 북카페형 도서관과 열람실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18억 3천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배봉산내 숲속도서관 사업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시설비 등						인테리어비 (북카페 조성 등)	이전비 등			자산 취득비	도서관 이전 (컨테이너)
	소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BF 인증 ¹⁾	폐기물 처리비		소계	각종 인입비	BF 인증 수수료	물품 취득비	
1,830	1,564	1,444	66	18	18	18	50	26	18	8	180	10

- 동대문구청은 숲속도서관 건립을 위해 총 18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13억 3천3백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구비 5천만원, 시비보조금 2억 3천4백만원이며, 미확보예산 2억 1천2백만원은 추경 등을 통해 구비로 확보 예정임.
- 시비보조금은 서울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 예산으로부터 교부받았음.

〈배봉산내 숲속도서관 예산확보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2017년	2018년	
계	1,830	1,383	447	
구 비	262	50	-	미확보예산 212
특별교부금	1,333	1,333	-	
시비보조금	235	-	235	

다. 종합의견

- 배봉산근린공원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 총 면적 265.582㎡ 중 149,676㎡가 사유지(서울시립대 소유)이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설 계획, 설치 등

1)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증 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공원의 관리 권한이 동대문구에 있어 실질적으로 시립대학교의 부지 활용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 도시공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물설치만 가능함. [참고자료1]
- 또한 배봉산 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숲속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과 부지 용도에도 적합하여, 해당부지에 대한 시립대의 숲속도서관 건립 동의안은 주민들에게 삶의 휴식과 독서기회 확대, 공원 이용의 편의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립대학교와 동대문구는 본 동의안 가결 이후 숲속도서관 관련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숲속도서관의 건립이 실무적으로 상호합의된 사안이기는 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상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 제출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완료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1조 (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6에서 허가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 나. 설치 및 관리 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 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구 청 장
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 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 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아.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 공원장, 서울식물원장